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2. . .<br>(제 회)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원희룡<br>(국토교통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2.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22.1)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공품질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의 민간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 내실화를 위해 감리 업무 종사를 위한 건설기술인의 전문 교육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자재 품질 관리 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적정성 확인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공공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의 민간 활용 근거 마련(안 제65조 개정).

나. 국토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적정성 확인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안 제115조 개정)

다. 건설기술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매년 교육(연 7시간)을 신설 하면서 그 시간만큼 기존 3년 주기 교육시간 단축(별표 3 개정)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항 중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을 “발주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로 한다.

제115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적정성 확인

별표 3 제2호나목2)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나) 계속 교육 | (1) 일반 계속교육   | (가)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14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기간을 계산한다. |
|          |               | (나)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49시간 이상 |                                                                                   |
|          | (2) 필수 계속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7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기간을 계산한다. |
|          | (3) 안전관리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 나목2)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인이 종전의 별표 3 제2호 나목2)나)(1)에 따른 일반 계속교육을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은 개정된 별표 3의 제2호나목2)나)(1)의 일반 계속교육의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65조(건설기준) ① ~ ⑤ (생략)                                                                                                                       | 제65조(건설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u>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u> | ⑥ -----<br>-----<br>-----<br>----- 발주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 |
| ⑦ · ⑧ (생략)                                                                                                                                  | ⑦ · ⑧ (현행과 같음)                                                                 |
|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 ② -----<br>-----<br>-----.                                                     |
| 1. ~ 7.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
| <신 설>                                                                                                                                       | 8.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건설자재 · 부재의 품질 적정성 확인과 확인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등의 조치 요청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
| 연 락 처       | (044) 201 - 3584 |